

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보수지급 규정

(제정 2004. 3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신동아학원정관 제43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여 임용하는 비정년계열 계약 임용직 전임교원(이하 “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”이라 한다)의 급여책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여 임용하는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보수(급여)”라 함은 기본연봉과 연구보조비,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- ② “기본연봉”이라 함은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에게 1년간 지급되는 기본급, 업무수당, 장기근속수당, 급량비, 정근수당, 상여, 명절수당, 학생지도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며 경력에 따른 기본연봉은 교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한다.
- ③ “연구보조비”라 함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④ “기준 연봉”이라 함은 “기본연봉”과 “연구보조비”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, 이는 연봉책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.
- ⑤ “제수당”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말하며, 제수당은 연봉책정 및 인상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⑥ “월봉액”이라 함은 개인별 기본연봉과 연구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- ⑦ “보수의 일할 계산”이라 함은 그달의 월봉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을 말한다.

제2장 연봉의 운영

제4조(보수의 체계) ①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연봉과 연구보조비, 제수당으로 구분한다.

② 제수당은 본교 교직원보수지급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5조(신규임용시의 연봉책정) ①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(비정년계열 포함)의 초임연봉은 교원인사규정 [별표 제1호]에 의하여 산정된 경력을 기준으로 최초 임용일 현재 교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책정한다.

② (삭 제)

③ 국책사업단의 사업비로 지급되는 계약임용직교원(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포함)의 초임연봉은 교원인사규정[별표 제1호]에 의하여 산정된 경력을 기준으로 교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책정한다.

④ 국내·외 석학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.

제6조(연봉의 지급방법) 연봉이 책정되면 12개월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.

제7조(연구보조비의 지급방법) 연구보조비는 초임연봉 산정시에만 책정한다.

제8조(연봉의 재계약) ①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은 임용 2년차부터 매년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을 심사하여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연봉책정 기준표 [별표 제1호]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. 다만,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에 따르며, 외국인 교원은 교직원보수지급기준의 계약임용직교원(비정년, 외국인) 연봉기준표에 따른다. <개정 2015.9.1., 2017.6.22.>

② (삭 제)

③ 기타 특별한 경우, 총장은 그 연봉과 업적등급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국책사업단의 사업비로 지급되는 계약임용직교원(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포함)은 임용 2년차부터 직급과 관계없이 매년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을 심사하여 각 사업단 별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. <개정 2013.9.27.>

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 항목을 준용한다. 단,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심사는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을 따른다. <개정 2013.9.27.>

⑥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심사는 연봉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실시한다.

⑦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의 연봉은 대학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 책정방법 및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행 6개월 전 관련내용을 예고토록 한다.

제3장 보수의 지급

제9조(보수의 지급방법) ①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.

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보수지급일)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7일에 지급한다. 단,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11조(보수의 계산) ① 보수의 계산은 임면 일자를 기준으로 월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 (삭 제)

제12조(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기간 중의 보수) 휴직, 직위해제, 징계처분 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비정년계열 계약 임용직 교원의 보수) ①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에게 행한 징계처분,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(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)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

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
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(또는 휴직 처분)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(휴직처분 기간)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4장 제수당

제14조(수당의 지급시기)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제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의 신청에 의하여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가족수당) ① 부양가족이 있는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부양가족의 범위 및 수당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6조(직책수당) (삭 제)

제17조(자녀학자금보조비) (삭 제)

제18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 등 전주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 이전(2003. 12. 31 이전)에 계약임용직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급여는 본인이 기존전임교원 보수지급 방법이나 본 규정 중에서 선택토록 하며, 한번 선택된 급여지급 제도는 변경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 제3항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0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규정 제8조(연봉재계약), [별표 제1호], [별표 제2호], [별표 제3호]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2012. 3월 및 2012. 9월 심사 기준 연봉제 교원 중 강의중심교원의 업적등급은 연평균 업적평가점수(연구,교육,취업,봉사)에 따라 정하며, 업적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산정은 다음과 같다.

평가등급	S	A	B	C
업적평가점수	500점 이상	350점~ 500점 미만	200점~ 350점 미만	200점 미만
가중치	$1/16 \times (70\%)$	$1/16 \times (30\%)$	$1/16 \times (0\%)$	$1/16 \times (-30\%)$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제1호〕 <개정 2015.9.1., 2017.6.22., 2020.4.14.>

비정년계열 강의중심교수 연봉 책정 기준표

※ 비정년계열 강의중심교수의 연봉책정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업적을 평가한 후 평가등급에 따라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1. 초임연봉 책정기준

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초임기본연봉은 교원인사규정 [별표 제1호]에 의하여 산정된 경력을 기준으로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의 계약임용직교원(비정년,내국인) 초임연봉 책정기준표에 따라 산출한다.

2. 연봉산정 기준

가. 연봉인상률 적용방법

신규임용 및 재임용 다음연도 이후의 연봉산정 방법은 ①전년도 기준연봉에 업적평가 등급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한 ②업적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

$$\text{연 봉} = \text{①전년도 기준연봉} + \text{②업적급}[\text{전년도 기준연봉} \times \text{업적평가등급에 따른 인상률} \{1/16 \times (-30\% \sim 70\%)\}]$$

나. 인상률 책정방법

① 수퍼스타칼리지 소속 교원

가) 평가항목 및 배점

(가)강좌평가 (연간)	평가점수	(나)연구업적 (연간)	평가점수
상위 10% 이내	70점	70점 이상	70점
상위 30% 이내	60점	0점 ~ 70점 미만	연구업적 점수와 동일한 점수 반영
상위 50% 이내	50점		
상위 60% 이내	40점		
상위 70% 이내	30점		
상위 70% 미만	0점		

※ iClass 강의 개발 : 강의당 인센티브 점수 5점 반영

※ 강좌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좌평가를 기준으로 한다.

※ 연구업적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 게재만 인정한다.

나) 평가등급에 따른 인상률

평가등급	S	A	B	C
인 상 률	$1/16 \times (70\%)$	$1/16 \times (30\%)$	$1/16 \times (0\%)$	$1/16 \times (-30\%)$
평가항목 (가)+(나) 합계(연간)	125점 이상	115점 이상 ~ 125점 미만	60점 이상 ~ 115점 미만	60점 미만

② 단과대학 소속 교원

가) 평가항목

- 1) 연구업적 :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한다.
- 2) 강좌평가 : 전임교원의 강좌평가를 기준으로 한다.

나) 평가등급에 따른 인상률

- 1) 등급에 따른 인상률 <개정 2017.6.22.>

평가등급	S	A	B	C
인 상 률	$1/16 \times (70\%)$	$1/16 \times (30\%)$	$1/16 \times (0\%)$	$1/16 \times (-30\%)$

- 2) 등급산정 <개정 2017.6.22.>

연구업적 강좌평가(연평균)	100점 이상	100점 미만
상위 30% 이내	S	B
상위 50% 이내	A	B
상위 50% 미만	B	C
상위 70% 미만	C	C

③ 삭 제 <2015.9.1.>

3. 삭 제 <2015.9.1.>

4. 연봉 산정을 위한 평가등급은 교내·외 경력 합산하여 최대 33년까지만 적용한다.(교외경력=교원인사규정 [별표 제1호] 교육경력년수 환산율표에 따름) <신설 2015.9.1.>